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법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관련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19.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임신·출산 진료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가 폭넓게 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의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외의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의 환자 본인부담률, 의료인간원격협력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 확인 및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18.7.18.)에 따라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불법개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요양기관 관련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 개선 사항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 나.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안 제23조제3항 제1호)
- 다.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공개하는 인적사항 및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 명시하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 라.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전의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충당 순서를 결정(안 제51조 및 제52조)
- 마.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개선(별표 2 제3호 타목 및 너목)
- 바. 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의3)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

07조에 따른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소송과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자료
사.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안 별표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3.12. ~ 4.21.)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23조제3항제1호 중 “진료”를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으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된 징수금(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부당이득 징수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해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3명

2. 부당이득 징수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

3.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환급금”을 “과오납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료(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보험료”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제52조의 제목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을 “(과오납금의 충당·환급 시 가산 이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6조제2항 후단”을 “제86조제3항”으로, “환급금을”을 “과오납금을”로,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 “제86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제3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라 가입자 등을 회송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3)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지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담률을 곱한 금액

별표 4의3 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소송과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자료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 제23조제3항제1호, 별표2 제3호타목 및 같은 호 너목,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times$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times$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times$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 관련자 1)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times$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times$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times$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나. 요양기관 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times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신고인: 가 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times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times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times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생략)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 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1. ~ 3. (생략) <u><신설></u> 4.·5. (생략) ④ ~ ⑥ (생략) <u><신설></u>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라 부 담한 금액</u>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u>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u>

지 당시 체납된 징수금(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부당이득 징수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

<신 설>

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해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제23조(부가급여) ①·② (생략)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3명 2. 부당이득 징수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 3.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23조(부가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임신·출산과 관련된 <u>진료</u>에 드는 비용 2. 3. (생략) ④ ~ ⑧ (생략) 제48조(고액·상습채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채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채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채납처분비(<u>이하</u> “채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3. (생략)	③ ----- ----- ----- ----- -----. 1. ----- <u>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u> ----- 2.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고액·상습채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 ----- ----- ----- -----. 1. ----- ----- ----- <u>이하 이 조에서</u> ----- ----- 2. 3.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략) 제51조(환급금의 충당 순서)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경우 가.·나. (생략) 다. ----- -- 보험료(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단서 신설> 2.·3. (생략) ② (생략) 제52조(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법 제8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환급금을 보험료 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에는 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과오납금-----)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보험료. 다만, 납부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환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 제86조제3항----- ----- 과오납금을 ----- ----- 환
---	--

급통지서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 -----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 -----. 1. ~ 4.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6